

지역복지와 주민참여 – 지방분권화의 과제

김 종 해*

I. 문제제기

지역복지와 주민참여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재도입되면서부터 지방자치와 지역복지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 이유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처리하고 다스린다는 지방자치의 자기 통치의 원리와 지역사회내의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지역복지의 개념이 가지는 공통점 때문일 것이다.

지방자치제도 도입 초기의 관심사가 ‘지방자치제하의 지방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지역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면, 단체장의 선출이 반복되면서 앞의 질문에 대한 회의적인 반문의 형태로 ‘지방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에 대한 제약이 많이 남아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법령에 의해 위임사무의 성격이 강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에 다시 지역복지와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혁신과제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에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고 지방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것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되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자원이 분산되며, 권한이양의 핵심은 행정과 재정의 결정권이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 옮겨지는 것²⁾이다. 사실 우리사회에서 지방분권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91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지방자치제도는 지방분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http://100.empas.com/pentry.html?i=1836380>

2) http://www.provin.gangwon.kr/home/localpower/html/local_4.html

권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이미 지방분권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정부에 이양된 권한이 미비하여 자치권이 제한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은 충분한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의 이양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분권이 보다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분권, 지방자치제의 강화는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보다도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사회복지분야에도 역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분권의 강화가 지역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제의 도입 이후 지역복지에 대한 영향에 대한 평가는 상반된다.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제의 도입이 지역복지 발전에 기여했다는 관점도 존재하는 반면 오히려 지역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앞으로의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적으로 이양되어 지방자치권이 강화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지역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영향은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지방자치제의 영향보다 커질 것이다.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의 강화는, 지방자치와 지역복지간의 관계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지역복지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와 복지에 대한 회피, 지역간 복지 불평등과 격차의 확대라는 부정적 우려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간의 지방자치 경험이 지역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검토하여, 앞으로의 지방분권의 강화가 지역복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는가-주민참여의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 지방자치-지방분권의 지역복지에 대한 영향

1. 지방분권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중의 하나는 지방분권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의 실태는 중앙권한이 지방에 비해 과다하며(2002년 기준 국가사무 73%, 기관위임사무 3%, 지방사무 24%), 지방재정 구조가 과도하게 국가 의존적이고(국세대 지방세 비율이 80%:20%이며,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61%인 151개 자치단체가 지방세로 인건비 해결이 곤란한 상태이다), 지방자치제의 도입에도 자치권의 신장은 미약하며, 지방정부의 자치역량과 권한 부족으로 지역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이 빈약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A).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사회 혁신(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 지방정부 혁신(자치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중앙정부 혁신(전국적 과제 해결에 역량 집중)으로 국가의 재구조화를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지방정부와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 보충성의 원칙(주민에 가까운 정부로 우선 배분), 포괄성의 원칙(중·대단위 사무를 포괄 이양)의 3대 원칙과, 선도과제 우선 추진(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획기적 재정분권 추진), 정부혁신 작업과 연계 추진, 중앙부처의 자발적 참여 유도, 국민적 공감대 확대라는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B).

이러한 지방분권 로드맵에 의하면 현재의 중앙정부의 권한중 상당 부분이 지방정부로 이양될 것이며,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지방정부로 이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재정분권의 방향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재정분권이다. 지방분권의 기본 추진방향의 하나로 획기적 재정분권의 추진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아래 주요 과제로 지방재정력의 확충과 불균형의 완화,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참여정부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확충, 광세 자주권의 확대 등이 그것이다.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광세범위가 확대되면 자연히 불필요한 업무가 지방으로 넘어간다. 따라서 단순히 재정뿐만 아니라 기능까지 이전되는 것이 분권의 온바른 방향이다(김병준 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인터뷰 내용).

재정분권의 구체적 실천은 categorical grants(범주적 보조금)에서 block grants 또는 general revenue sharing의 전환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분야의 보조금은 대부분이 matching에 의한 categorical grants의 형태이며, 일부 민간사회복지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block grants의 성격을 가지고는 있으나 회계지침에 의해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을 받고 있다. 지역복지 사무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정부의 고유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나(지방자치법 9조 2항)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개별 법과 중앙정부의 사업 지침, 보조금의 성격으로 인해 실제

로는 위임사무처럼 운영되고 있는 설정이다.

<표 3> 보조금의 유형

	목적(용도)의 규정	지방정부의 역할
categorical grants	협소하게 규정	중앙정부 정책의 정확(엄격)한 집행
block grants	광범하게 규정	주어진 기능적 범주내에서 정책의 수립과 집행
general revenue sharing	규정하지 않음	독립적 정책 결정

*자료: Neil Gilbert & Paul Terrell,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p.228

그러나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이러한 보조금의 형태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³⁾

(1) 국고보조금 정비의 기본 방향

○ 보충성의 원칙

-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정부 기능의 보완 측면에 있음을 원칙으로 함. 따라서 명백히 국가사무가 아닌 경우는 자자체가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많은 부분을 지방이양사업으로 함.

○ 포괄적 지원의 원칙

-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보조금을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원함.

○ 성과지향적 자기책임의 원칙

- 주민소송제 등 자율통제시스템을 비롯하여 지방정부의 성과관리 강화 방식을 구비함.

(2) 국고보조사업 정비 기준

○ 지방이양 대상사업

- 명백한 지방사무에 대한 국고보조

3) 「국고보조금 정비방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내부자료, 2004. 3. 을 참조함

- 반복적 집행성격의 시설물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 단순한 지방재원 보전성격의 보조사업
- 국고보조의 실익이 낮은 소액보조사업

○ 국고보조 대상사업

- 사무성격상 명백히 국가사무인 경우
-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나 지방이양시 축소가 예상되는 사업
- 중앙정부의 정책수립과 밀접히 연계되어있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국가적으로 대처해하는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

- 낙후지역, 농산어촌 및 지역 SOC 개발관련 사업
- 지역의 문화·예술·관광자원 개발관련 사업
- 지역전략산업, 문화관광클러스터 등 지역혁신 관련사업
- 기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규정된 사업

이에 따라 복지부도 기존 보조금에 대한 정비 방안(안)을 제시한바 있으며(별첨 자료 참조) 이에 따르면 기존의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중 상당 부분이 포괄적 보조금이나 지방정부의 고유 사무로 이양될 것이다.

보조금의 정비 방안에 따른 사회복지 재정의 분권화가 실행된다면(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매우 파격적인 복지재정 운영 방식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태수, 2004).

장 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발된 보건복지부 보조금 관리 정책의 정비 -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대한 자율성 신장 - 지역현실에 맞는 복지계획 수립의 계기 - 지역 주민 및 지역 NGO의 복지예산 수립과정의 참여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재정의 저열성을 염두에 둘 때 국가책임주의에 입각한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확충에 대한 걸림돌 가능성 -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복지인식이 일천함에 따른 지방정부 복지예산투여 회피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존재 - 지방정부간의 복지 불평등 내지 복지격차 심화 가능성 존재

2. 지방자치와 지역복지와의 관계

(1). 지방자치의 영향에 대한 관점

지방자치와 지역복지와의 관계에 대한 관점에는 지방자치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정향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관점과 반대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정향을 감소시킨다는 관점이 있다.⁴⁾

지방자치가 지역사회복지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으로는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넓어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실제적 욕구에 기반한 복지정책을 펼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진다는 것이며, 둘째는 지방정부의 재정편성권이나 행정적 권한에 대한 재량권이 커짐으로써 민선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지에 따라 독자적 사회복지 발전 계획의 수립과 다양한 복지정책이 가능하다(김연명, 1995)는 것이다.

지역복지 감소론은 지방자치의 실시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정향을 감소시킨다는 관점으로, 지방정부는 그 관할 지역의 경제성장(개발)을 최고의 목표로서 중요시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고,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증대되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그같은 속성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경제성장에 순기능적이라는 개발정책에 노력을 집중하는 대신 역기능적이라 생각되는 복지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다는 관점이다.⁵⁾

감소론이 주장되는 또 다른 이유는 재정적 문제이다.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정부는 주민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며 지역간 복지수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이인재, 1996).

(2) 지방분권과 지역복지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경험

①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복지예산의 변화

김수완(1998)의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에 관한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경제개발 비중이 복지비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경제개발비중이 높아질수록 복지비중은 낮아지는)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제약관점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다른 지역과 경쟁관계에 있고 지방정부 운영에 필수적인 재정력을 확보하며 대중적 지

4) 지방자치와 지역복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용일(1991), 신섭중(1990), 김연명(1995), 차홍봉(1994), 이인재(1996) 등을 참조

5) 감소론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김홍식(1994)을 참조

지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경제성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경제 발전 정책에 최우선을 두는 한편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복지 정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고보조금의 비율이 높으면 복지지출 비율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는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 즉 국고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이는 재정분권화가 이루어질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 도입의 복지예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다른 연구에서도 볼 수 있다. 강윤호(2000)의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사회복지 지출에 미친 영향은 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의 구성이후 사회복지 지출은 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서 감소하였으며, 자치단체장의 선출 이후에는 자치구의 사회복지지출은 증가한 반면 도와 군은 감소하고 광역시와 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역시의 자치구의 경우 지역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복지 지출에 우선 순위를 둘 수 있는 반면 도와 군은 지역주민의 개발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복지 지출보다는 지역개발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반면 김교성과 이재완(2000)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나 지방자치와 관련된 정치적 요인들은 사회복지 지출의 확대과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조영훈(2001)은 지방자체제도 실시 이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복지 예산의 비율과 사회복지 시설의 변화라는 두가지 차원에서 지역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② 부천시 사회복지 예산의 변화

부천시의 2000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다음 <표 1>과 같다.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62.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사회복지 시설과 기관에 대한 지원이 3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부천시 사회복지 예산의 대부분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보호,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 장애수당 등과 같은 소득보장적 예산임을 보여준다.

이를 다시 재원의 출처별로 살펴 보면 역시 대상자 지원 예산은 국비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지원은 시비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천시 복지예산에서 국도비의 비중이 높은 것은 부천시의 복지 정책은 시 자체의 특징적인 복지정책보다는 국고보조에 의한 위임사무로서의 복지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2>는 사회복지 예산에서 국도비와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비교한 내용이다. 이 표에 의하면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6.3%(1998년)에서 45.4%(1999년), 41.5%(2000년), 37.6%(2001년)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반대로 국비의 비율은 22.1%(1998년)에서 40.2%(1999년), 43.9%(2000년), 49.7%(2001년)로 계속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결국 부천시 사회복지 예산은 외형적으로는 양적 성장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98년 수준에서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98년 대비 사회복지 예산은 312.4억에서 597.6억으로 금액으로는 약 285.2억 원이, 비율로는 약 1.9배로 증가하였으나 시비 만을 놓고 본다면 불과 약 18억 원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IMF 이후라는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시 자체의 재정 확보에 의한 예산 확대 라기 보다는 복지비용의 충당을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이 기간 동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이 복지비용의 증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1> 2001년 사회복지 예산의 기능별 분류

(단위: 천 원)

	국비	도비	시비	계
행정비용	5,000(0.4)	0(0.0)	1,228,907(99.6)	1,233,907(2.0)
시 직접사업	228,526(9.5)	302,432(12.6)	1,878,573(78.0)	2,409,531(3.4)
시설지원	4,885,644(26.3)	2,776,349(14.9)	10,915,243(58.8)	18,577,236(31.0)
대상자지원	24,620,259(66.0)	4,441,341(11.9)	8,213,824(22.0)	37,275,424(62.3)
임의단체 지원	0(0.0)	0(0.0)	267,420(100)	267,420(0.4)
계	29,739,429(49.7)	7,520,122(12.5)	22,503,967(37.6)	59,763,518(100)

<표 2> 예산 구성의 변화 추이

(단위: 천 원)

년도	국비	도비	시비	계
2001년	29,739,429(49.8)	7,520,122(12.6)	22,503,967(37.7)	59,763,518
2000년	18,289,080(43.9)	6,086,988(14.6)	17,286,031(41.5)	41,662,099
1999년	11,097,906(40.2)	3,971,409(14.4)	12,547,491(45.4)	27,616,806
1998년	6,911,104(22.1)	3,613,974(11.6)	20,719,751(66.3)	31,244,829

③ TANF의 경험

1996년 미국은 ‘개인책임과 근로기회 조정법(the Personal Responsibility &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김종일, 2001).

첫째, AFDC를 폐지하고 한시적 구호제도인 TANF로 대체한다. TANF의 수급자에게는 엄격한 근로의무가 주어지며, 수급기간은 평생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둘째, 공공부조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주 정부에 넘긴다. 과거에 시행되던 연방정부의 대응보조금(matching fund)을 폐지하는 대신에 TANF의 소요액은 전액 연방정부의 포괄적 교부금(block grant)을 통해 지급한다. 각 주와 지방 정부는 이 돈을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공공부조는 AFDC의 수급자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중 지방분권과 관련된 내용이 예산 지원 방식의 변화이다. 포괄적 교부금 방식의 재원 배분 구조 자체가 수급자의 수를 줄이는 유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연방정부의 포괄적 교부금은 수급자의 수의 감소여부와 관계없이 해마다 일정하기 때문에 수급자의 수가 줄면 줄수록 주의 재정적 여유는 반대로 커지게 된다. 이러한 장치는 각 주로 하여금 수급자의 수를 줄이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게 하였다.⁶⁾

④ 일본 가와사키(川崎)의 보육료

일본의 보육비용은 ‘보육단가’와 ‘보육료’로 구분되어 산정된다.⁷⁾ <그림 1-1>은 국가 기준에 의한 보육비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총 운영비⁸⁾ 91억 7천 여만엔 중 보호자가 보육료로 약 48억엔을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을 중앙정부와 시가 절반씩 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 기준에 의하면 보육비용중에서 보호자가 52.6%를, 중앙정부와 시 정부가 각각 23.7%를 분담하게 된다.

6) TANF의 결과는 지방분권보다는 예산이 일정한 지침아래 categorical에서 block방식으로 변화된데에서 오는 영향이다. 재정분권의 영향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7) 보육단가는 보육비용을 의미하는데 소재지, 보육시설의 정원 규모,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달리 결정되며, 보육료는 보호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8) 총 운영비는 보육단가에 아동수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참고로 가와사키시는 2003년 4월 1일 기준으로 인구 1,284,963명(571,529가구; 취학전 아동은 76,225명))에 공립보육소 88개소에 8,175명, 사립보육소 25개소에 2,790명, 총 보육소 113개소에 10,965명(정원 기준, 현원은 10,879명)의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영비 9,166,254천엔(100%)
4,343,762 (47.4%)		국가 기준 보육료 (보호자 부담액)
국가 부담	시 부담	4,822,492,(52.6%)

자료: 川崎市, かわさき の保育概要, 平成15年(2003년)

<그림 1-1> 가와사키(川崎)시의 2003년 보육비용 구성(국가 기준)

그러나 실제로는 각 지방정부가 자체 기준에 의해 보육비용을 추가하기 때문에 실제 비용의 분담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그림 1-2>는 가와사키 시 자체 기준에 의해 보육비용을 산정한 것이다. 국가 기준 보육비용 이외에 시 정부가 자체 기준에 의해 법정외 부담금으로 약 98억 5천만엔을 추가 부담함으로써 총 보육비용은 약 190억 엔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국가 기준 보육료중에서 일부를 경감하여 이를 시 정부가 대신 부담하여 결과적으로는 총 보육비용중에서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16.8%에 불과하고 중앙정부가 11.4%, 시 정부가 71.8%(시 부담 11.4 + 경감분 8.5 + 법정외 부담금 51.9)를 분담하게 된다.

		총 운영비 19,019,189천엔(100%)		
국가 부담	시 부담	국가 기준 보육료 4,822,492(25.3%)		시 법정외 부담금 9,852,935천엔 (51.9%)
2,171,881 (11.4%)	2,171,881 (11.4%)	보호자 부담액 3,202,200 (16.8%)	경감분 1,620,292 (8.5%)	

자료: 川崎市, かわさき の保育概要, 平成15年(2003년)

<그림 1-2> 가와사키(川崎)시의 보육비용 구성(시 자체 기준)

이는 지방자치제하에서 지방정부의 의지로 보육서비스의 기준과 비용부담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호자의 보육료 부담에 있어서도 가와사키시는 중앙정부의 기준보다 기준을 세분하여 총 25단계로 구분하여 보육료를 부과하고 있다(일본의 보육료는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⑤ 우리나라의 다른 예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 이후 사회복지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예들이 많이 있다. 대전 유성에서 시작된 학교급식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초기에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이후 다른 지방정부에도 많이 확산되었다)이나 경기도 안산에서 이루어졌었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책들, 과천의 보육조례제정 등이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의 의지에 따라 복지분야가 강화된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러한 논의나 사례들은 지방자치 또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사회복지에 대해 전적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면 지역의 의지나 역량, 정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III. 지역복지의 과제 -주민참여

참여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종합하면 몇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참여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정책결정 주체의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정책결정에 관한 권력이 소수 정책결정자로부터 주민으로의 이동(분산 또는 공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셋째는 정책의 내용이 주민이 의도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결국 참여란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정을 효과적으로 관여·통제함으로써 정책결정의 권력을 가지는 것으로 참여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권력의 재분배라는 것이다(김종해, 1998). 여기에서는 참여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참여의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1. 파트너쉽 = 협치(governance)의 수립

지방분권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분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분권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로드맵에서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관에서 민으로의 분권과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분권과 관련하여 1990년대 이후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개념이 governance이다.

거버넌스는 그 개념이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어 일반화하기가 어렵다.⁹⁾ 그러나 최소한의 공통점을 제시한다면 ‘관련 행위자’들의 ‘공동결정’을 통해 가치분배(정

9) 거버넌스와 로컬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진재문(2004)와 유해숙(2004)을 참조하기 바람.

책의 결정과 집행)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공동결정(=협치, 공치)의 개념은 바로 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民間간의 관계가 수직적, 위계적 관계에서 수직적·수평적 위계의 다차원적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컬거버넌스는 지역적 수준에서 형성되는 거버넌스로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에 관한, 또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로컬거버넌스는 지역사회에서의 정책결정권한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련 행위자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지역에서의 분권을 의미한다.

로컬거버넌스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킬 수는 없지만(이는 시민사회 자체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기회와 가능성은 제공하여야 한다. 지역주민은 단일한 실체는 아니다. 거주지역에 따라, 직업에 따라, 계층에 따라 관심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달라지는 이질적인 구성체이다. 이러한 다양한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의견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와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지방정부의 행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power)을 지역과 공유할 수 있는 분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로컬거버넌스의 한 예로는 '주민참여예산제'¹⁰⁾를 들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예산 편성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 편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를 구성하였고, 주민참여 예산 학교를 1년에 2회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편성과정중에는 예산정책토론회를 사전설명회, 분야별 설명회와 총괄토론회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관 주도로 이루어졌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킨 제도로 예산편성권한의 분산(공유)가 이루어진 거버넌스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예로는 경남 남해군에서 시행된 '민원공개법정'¹¹⁾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민원공개법정은 '집단민원과 인허가 민원들을 이해관계가 대립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주민대표,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판결을 내리는 제

10)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http://210.179.186.71/click/2002jeajung/plan.hwp>를 참조

11) 남해군의 민원공개법정에 대해서는 <http://210.204.158.8/law/htmls/HUN/hun3-1-3.html>와 http://www.namhae.go.kr/namhae_gun/kind_customer/kind_customer_proc#민원공개법정을 참조

도'로 지역에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민원에 대해 주민들이 참여하여 결정하는 정책결정권한의 분산(공유)가 이루어진 제도로 일종의 로컬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분야에서는 리우환경회의의 agenda21을 실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물론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local agenda21 사업도 로컬거버넌스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시민사회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를 위한 지원과 참여를 위한 제도의 마련은 지방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로 든 제도들은 모두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지원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른 지역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은 그 방식에 따라 복지분야의 새로운 관계-복지로컬거버넌스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심의하고 지역에서의 연계사업을 주도할 수 있다면 복지 부분에서의 권력이 관과 민사이에 공유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 사회복지조직의 활성화

로컬거버넌스는 지방정부의 제도만으로는 형성되지 않는다. 파트너로서의 사회복지부분의 조직화가 동시에 이루어져한다. 사회복지협의체의 참여나 이를 통한 파트너쉽의 형성은 개별 사회복지 기관의 노력이 아니라 전체 사회복지기관의 조직화에 의한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사회복지조직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사협회 또는 각 부문별 조직들(예를 들어 실무자 연합이나 재가복지연합 등과 같은)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시군구 단위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조직들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개별 사회복지기관들은 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사회내에서 사회복지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슈를 제기하며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 과제로 논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를 조정하고 대변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사회복지조직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의 조직화는 기관단위의 조직화뿐만 아니라 실무자단위의 조직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의 복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실무자들은

미시적 차원의 실천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실천 활동에의 참여는 미미한 수준이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복지 기관 지도자들의 지역복지활동에의 소극적 태도, 지역복지 실천 활동의 미비 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이인재, 2004). 이러한 점에서 실무자들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¹²⁾

3. 시민단체와의 연대와 사회복지운동조직의 형성

주민참여, 복지부문에서의 로컬거버넌스의 형성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조직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방의제21이 활성화된 지역들의 사례를 보면 의제 조직에 단순히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단체와 전문가,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진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하다.

사회복지부문에서도 주민들의 참여와 로컬거버넌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진 사회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에는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진 자생 조직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 단체들은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이후 특히 지역복지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다. 그러나 사회복지기관과 이러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는 그리 원만한 편은 아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사회복지기관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준공공기관이면서도 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회복지기관들은 전문성이 결여된 시민사회단체가 사회복지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기관은 시민사회로부터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지방분권 내지 재정분권이 강화된 이후 지역사회나 지역의 시민사회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지역복지 예산의 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사회복지기관과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양자의 연대를 위해서는 서로간의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사회복지부문이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대를 기반으로 지역의 복지운동조직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¹³⁾

12) 이외에 사회복지실무자들의 조직화에 대해서는 이인재(2004), *한국지역복지실천론*, 제3장을 참조

13)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앞의 이인재(2004)를 참조

지방분권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관에서 민으로의 분권이 가능하고 지역차원에서의 거버넌스의 형성(파트너쉽의 형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에서 관에 대응하는 단일한 민간조직이 형성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기관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 복지운동조직의 형성은 이러한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4. 주민조직화 지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참여란 정책결정권한의 재분배(공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의 정책결정, 그리고 지역복지정책이 지역의 문제를 반영하고 지역의 주민들의 선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참여가 개별적, 개인적,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조직적, 집합적,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결국 지방분권과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시민사회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기관의 기능을 서비스 제공의 기능과 조직화의 기능으로 구분한다면 현재의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평가는 서비스 제공 기능은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는 것에 비해 조직화의 기능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조직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도 자원봉사자 조직, 후원자 조직, 이용자 조직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주민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용자, 또는 사회복지 재원의 제공자나 지지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지역복지의 주체(생산자와 정책결정자)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주민 조직은 단순한 자조집단을 넘어서는 정책 과정 참여자로서의 조직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일부 사회복지기관에서 최근에 마을만들기와 같은 주민조직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화는 개별 기관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복지조직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분권과 참여의 전제인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 전반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V. 결론

지방분권이 지역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인가에 대한 답은 개방적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는 지방분권

시대의 지역복지문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지역복지협의체의 구성 등은 법에는 새롭게 규정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새로운 과제는 아니다.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수행해나가는가에 따라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지방분권, 재정분권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중앙으로부터 분산된 자율과 권한을 지역의 시민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민간 조직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시민사회와 사회복지계 역시 지방분권이 지역에 또는 지역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고려하기보다는 지방분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로컬거버넌스와 지방분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 개별적인 관심에서 공동의 관심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개별적인 노력이나 참여를 벗어나 집합적인 공동의 노력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조직화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윤호. 2000. “지방자치의 실시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에 미친 영향”, 「한국 행정학회 학계학술대회 논문집」
- 김교성 · 이재완. 2000.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의 결정 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4호, 한국사회복지학회
- 김경혜. 2003. 「자치구 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 매뉴얼 개발 연구」,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 김수완. 1998. “한국지방자치제가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1990-1995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김연명. 1995. “지방자치선거와 사회복지부문의 주요 쟁점”, 「지식인연대 공개토론 자료집」
- 김융일. 1991. “사회복지 인력과 재정”, 「지방화시대와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 협의회
- 김종일. 2001. 「복지에서 노동으로」, 일신사
- 김종해. 1998.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쟁점”,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상황과 복지」, 제4호
- 김홍식. 1994. “지방자치와 사회복지행정 체계”,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제10권 2호
- 남찬섭. 2004. “최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내용과 의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동향」, 2004. 4월호
- 백종만. 1994. 참조,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국가와 민간간의 역할 분담 유형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4 참조
- 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2003. 「2003년 사업보고서」
- 유해숙. 2004. “지역복지운동과 거버넌스 유형 연구”, 가톨릭대 박사학위논문
- 이승종. 1993.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배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승종 · 김홍식(1992),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 복지서비스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26권 2호
- 이인재. 1996. “지방자치시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사회복지정책연구소, 「한신사회복지연구」 제 4호
2004. 「한국지역복지실천론」 나눔의 집
- 이태수. 2004. “재정분권과 사회복지, 이대로 좋은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토론회(2004. 5) 자료집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A.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비전과 추진방향”,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전략과 비전> 국정과제회의 자료
- 2003B.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 7대 기본 방향과 20대 주요과제에 대해서는 별첨 참조
- 조영훈. 2001. “지방분권화와 복지수준의 지역간 격차: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서울시와 4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17권 2호, 한국사회보장학회
- 진재문. 2004. “지역사회 사회복지행정의 로컬거버넌스: 가능성과 한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제 18집
- 차홍봉. 1994. “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 수요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제7회 전국 사회복지사대회 발표 논문
- Neil Gilbert & Paul Terrell(1998),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4th ed.

<별첨자료 1> 지방분권 추진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

(지방분권전문위원회)

기본 방향	주요 과제
I.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	1. 지방분권 추진 기반 강화 2.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3.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4.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5.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II. 획기적 재정분권의 추진	6. 지방재정력 확충 및 불균형 완화 7. 지방세정제도 개선 8.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 9.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건전성 확보
III.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10. 지방자치권 강화 11. 지방정부 내부 혁신 및 공무원 역량 강화
IV.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12. 지방의정 활성화 13. 지방선거제도 개선
V.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14. 지방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체계 확립 15.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
VI. 시민사회 활성화	16. 다양한 주민참정제도 도입 17.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강화
VII. 협력적 정부간 관계정립	18.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체계 강화 19. 지방정부간 협력체계 강화 20. 정부간 분쟁조정기능 강화

<별첨자료 2> 최근 논의된 복지부문 보조금사업의 재편(안)

(2004. 3. 20 현재)

지방이양사업			포괄보조사업		
번호	사업명	'04예산	번호	사업명	'04예산
1	정신요양시설운영	30,186	1	임산부영유아건강검진	78
2	사회복지시설운영	6,189	2	선천성대사이상검사등	2,378
3	공공보건인력개발	663	3	미숙아등치료비	1,008
4	공공보건사업	800	4	노인의치보철사업	6,607
5	대도시방문보건사업	1,000	5	치아홈메우기사업	1,206
6	지역봉사사업	1,167	6	구상보건설설치	1,238
7	장애인복지관운영	31,041	7	한방지역보건사업	433
8	장애인재가복지센터운영	2,089	8	장애인 의료시설기능보강	2,014
9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1,901	9	장애인 직업시설기능보강	6,877
10	장애인단기보호시설운영	759	10	그룹홈형태아동보호	215
11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1,405	11	부랑인시설운영	14,642
12	의료재활시설운영	1,829	12	권역별재활센터건립	2,000
13	장애인체육관운영	365	13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150
14	시각심부름센터운영	2,035	14	국가조기암검진사업	7,803
15	시각재활지원센터운영	569	15	소아백혈병의료비지원	1,250
16	수화통역센터운영	954	16	원폭진료소운영	27
17	정신지체자립지원센터운영	378	17	희귀난치성의료비	28,533
18	해피콜봉사센터운영	130	18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	5,231
19	장애인특별운송사업	374	19	사회복귀시설기능보강	1,111
20	편의시설설치시민축진단	354	20	국민기초생활급여	1,677,051
21	청각아동달팽이관수술	750	21	자활근로사업	162,432
22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224	22	자활및사회적응프로	1,221
23	장애인생활시설운영	107,204	23	자활후전기관운영	24,627
2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14,786	24	의료급여	1,880,673
25	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5,171	25	재활보조기구교부사업	1,141
26	장애인체육관기능보강	2,500	26	장애인의료비	11,111
27	장애인지역재활시설차량	328	27	장애인자녀학비	2,272
28	장애인생활시설치과유니트	240	28	장애인수당지급	66,449
29	경로당운영	23,597	29	장애인아동부양수당	1,039
30	경로당활성화	440	30	장애인등록진단비	272
31	경로식당무료급식	7,672	31	장애인생산품시설보장	445
32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5,854	32	장애인생활시설기능	15,119
33	노인건강진단	514	33	장애인생산품시설설치	210
34	치매상담센터운영	292	34	장애인체육대회(경상)	560
35	노인일거리마련운영	759	35	장애인체육대회(자본)	600
36	지역사회시니어클럽운영	3,060	36	사할린한인지원	574
37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11,735	37	노인시설기능보강	83,735
38	노인시설운영	100,614	38	노인치매요양병원	19,134
39	노인복지회관신축	3,687	39	경로연금	214,500
40	아동시설운영	65,291	40	아동복지시설운영	800

지방이양사업			포괄보조사업		
번호	사업명	'04예산	번호	사업명	'04예산
41	결연기관운영	1,448	41	입양정보센터운영	17
42	입양기관운영	143	42	입양아동양육보조금	487
43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1,682	43	아동시설기능보강	5,071
44	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	717	44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8,813
45	소년소녀가정지원	3,952	45	모자복지시설기능보강	1,532
46	가정위탁양육지원	5,376	46	저소득아동보육료	93,693
47	퇴소아동자립정착금	600	47	만5세보육료	53,449
48	결식아동급식	10,925	48	장애인무상보육	5302
49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	100	49	보육시설기능보강	20,822
50	모자복지시설운영	6,004	50	부랑인시설기능보강	2966
51	모자퇴소자자립정착금	335	51	장사시설설치	12,567
52	미혼모중간의집운영	279	52	성병관리	256
53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218,694	53	에이즈환자진료비	1,620
54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	8,355	54	결핵사업	156
55	보육시설차량운영	800	55	전염병관리자교육	565
56	보육인프라구축	1,000	56	전염병관리요원교육	293
57	사회복지관운영	14,886	57	감염질환역학조사	8
58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3,596	58	예방접종관리	6,783
59	전담공무원인건비	80,937	59	전염병표본감시(경상)	954
60	공익근무요원인건비	1,756	60	급성전염환자격리비	265
61	업무보조공익요원인건비	2,609	61	예방접종약품비	151
62	푸드뱅크운영장비지원	357	62	전염병표본감시(자본)한	280
63	노숙자보호	9,276	63	센병보호시설운영	1,815
64	쪽방생활지원	388	64	한센양로시설운영	590
65	중소도시보건소신축	2,000	65	한센양로자생계비지원	691
66	장애인편의시설센터운영	360	66	한센시설및단체지원	1,500
67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운영	304	67	한센병재활지원	873
68	노인복지회관운영	3,709	68	생물테러관리(경상)	350
69	재가노인복지시설개보수	189	69	농어촌보건소지원	22,007
70	결연기관 PC 구입비	10	70	취약가정사례관리시범	135
71	사회복지관기능보강	5,000	71	지역암센터설치비	9,000
			72	자활지원제도개선시범	900
			73	장애인특별차량구입	75
			74	노인인력센터설립운영비	12,234
			75	복지사무소시범운영비	1,200